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환희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현재 의안의 비용 추계시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한시적으로 10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해당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마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비용추계서’로 통합하여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조건에 해당하는 연평균 5억원 미만 (한시적으로 10억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고,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경우에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